

【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-51호】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 통지)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7. 10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



- 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
- 2. 근 거 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, 제20조,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김○호	92.08.11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 불이행	-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-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인천시 부평구 주부토로 (이하생략)

- 4. 공고기간 : 2024.7. 10.~ 2024. 7.25. 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원미영(Tel. 032-540-570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